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. 11. 12 선고 2013가단4052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# 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6. 5 선고 2014나1569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. 11. 12 선고 2013가단40523 판결

### 전 문

원고주식회사 지지알엔아이

피고A

변론 종결 2014. 10. 22.

판결 선고 2014. 11. 12.

#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 - 가.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
  - 나.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,
  - 다. 7,213,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9. 26.부터 2014. 11. 1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  - 라. 2014. 3. 27.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,415,25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95%는 피고가,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, 나, 라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8,491,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원고가 2013. 10. 24. 별지 2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그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이 있는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차임은 월 1,415,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.

### 2. 판단

#### 가. 이 사건 건물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

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·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.

#### 나.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

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. 10. 24.부터 2014. 3. 26.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,213,209원 [7,076,250원(월

1,415,250원×5개월)+136,959원(1,415,250원×3일/31일), 원 미만은 버림]과 이에 대하여 2014. 9. 22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. 9. 26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. 11. 12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 그리고 피고는 2014. 3. 27.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,415,250원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도 반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원고는 2013. 9. 27.부터 2013. 10. 23.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나, 원고는 매각대금을 다 낸 날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2013. 10. 24.부터 소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# **3. 결론**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장창국**

별지